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제정일: 2010.12.23.

개정일: 2023.10.26.

담당부서: 기획처 기획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11조 및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동아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심사·의결한다.

1.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 심의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심사·의결
3. 기타 법령이 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및 자격)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학부총장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직원(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 포함 가능), 학생, 관련 전문가로 총장이 위촉한다. 다만, 학부모 또는 동문을 포함할 수 있다.

1. 교직원: 학생·취업지원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재무처장. 다만, 해당 보직 공석 시 교무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2. 학생: 학부 재학생으로 총학생회에서 추천한 자
3. 관련 전문가: 회계 또는 세무 관련 외부전문가(본 대학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제외)
4. 학부모: 총학생회에서 추천한 자
5. 동문: 각계 전문가 및 지역의 덕망 있는 외부인사로 대외국제처에서 추천한 자

③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 구성단위별 위원은 10분의 5 미만인 되도록 하고, 관련 전문가 위원을 선임할 때에는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학교를 대표하는 측과 학생을 대표하는 측이 협의하여 선임한다.

④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 학생 위원이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신분변동일로부터 위원 자격을 상실한다.

1. 학칙에 의한 징계처분
2. 교환학생으로 6개월 이상 파견

제4조(간사) 위원회의 회무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획과장으로 한다.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0분의 4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하여야 한다.

④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및 회의자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각 위원에게 통지 및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회의 개최 7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전까지 통지 및 본 대학교 홈페이지에 게시

2. 회의자료: 회의 개최 5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전까지 송부

제7조(회의록의 공개) ① 회의록은 회의일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본 대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의7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회의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때에는 비공개 사유 및 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비공개 사유가 해소되거나 비공개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즉시 공개한다.

제8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및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